#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3049 발의연월일: 2025년 2월 일

발 의 자:최훈종의원

## 1. 제안이유

현행 하남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색상 등을 개선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원배지 모형, 색상, 재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배지모형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별표 2)

## 3. 검토의견

## 가. 입법 필요성

- 본 개정안은 하남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규격, 색상 등을 개선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취 지로 발의되었음.
- 의원배지는 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적절한 품 위와 상징성을 갖추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자긍심에 기여할 수 있음.

## 나. 입법 적정성

○ 의원 배지 개선은 하남시의회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으로, 새로운 디자인 적용을 위해 제작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나, 하남시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현재 예산의 범위 내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 법적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라. 결론

○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